

1. 개정이유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문구 수정(안 제21조제2항제5호 개정)
- 나. 현행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심사 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안 제38조제1항 개정)
- 다. 타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54조 및 제59조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7. ~ 5.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2항”으로, “의견 제출”을 “의견 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15명”을 “45명”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생략)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 입자에 대한 통지 및 <u>의견 제</u> <u>출</u> 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 ----- <u>의견 확</u> <u>인</u>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 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 ----- ----- <u>45명</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취업의 범위) 영 제68조제 1항제3호에서 “취업”이란 법 제 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 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취업의 범위)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 · 4. (생략)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①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생략)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u>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u> 3. ~ 5. (생략) ② · ③ (생략)	2. ----- -----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 ----- ----- ----- 3. · 4. (현행과 같음)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한국장애인고용공단</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